

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 및 기능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한다.

- 가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- 나.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- 다. 교직원·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- 라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마.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마.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

제5조(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) ①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학부대학장, 기획조정처장, 학생처장, 입학처장, 센터장, 전략기획팀장, 학생지원팀장, (인문)관리팀장, (자연)관리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④위촉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학생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생활·복지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·결정
6.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
⑥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위원회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6조(운영) 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학생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부서의 협조)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하거나,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